

## 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 6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(유선)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1조)
- 복지회관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중단시 원상복구에 있어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면 시장은 원상복구 이행상태를 확인만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(안 제12조제1항)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본문중 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전화(유선)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.”를 “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(사용자 중단신고) 복지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<u>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 (사용자 중단신고) 복지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<u>전화(유선)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2조 (원상복구) ①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(위탁사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2조 (원상복구) ①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(위탁사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<u>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②(생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